



## 건축위원회규정

제정일	2013. 8. 1
개정일	2022.11. 1
개정차수	3차
담당부서	관리과

- 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 건물·시설물의 신축, 증축, 개축, 보수, 조경에 대한 계획, 분석 및 심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 
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총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9. 9. 1.)  
 ③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
- 제 3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소집한다.  
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 4조 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계획, 시행에 대한 분석 및 심의한다.  
 1. 각종 건물의 신축, 증축에 수반되는 사항  
 2. 시설물의 개축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
 3. 교내 조경에 관한 사항  
 4. 그린캠퍼스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(신설 2022.11. 1)  
 5.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직원 및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계획하며, 검토, 시행 및 분석하여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(개정 2017. 6.21)  
 6. 기타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 
 ② 위원회는 신축, 증축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해산을 발의할 수 있다.
- 제 5조 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.  
 ② 위원회는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제 6조 (사무 관장) ① 위원회의 사무는 사무국에서 관장한다.  
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사무국 관리과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.
- 제 7조 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